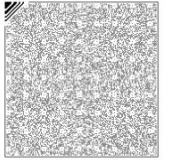




환 경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 알림

1. 축산업의 규모화·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로 운영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('13.2.20, 농림축산식품부·환경부·국토교통부)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무허가 축사의 배출시설 인허가시 가축분뇨법령 적용(해석)에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 유권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각 시도에서는 소속 시·군·구 환경부서 뿐만 아니라, 축산·건축부서에도 시달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 1부. 끝.

환 경 부 장 관



수신자 서울특별시(물재생시설과장), 부산광역시(생활하수과장), 대구광역시(물관리과장), 인천광역시(수질환경과장), 광주광역시(생태수질과장), 대전광역시(생태하천과장), 울산광역시(환경보전과장), 경기도수자원본부(수질관리과장), 강원도지사(수질보전과장), 충청북도지사(수질관리과장), 충청남도지사(물관리정책과장), 전라북도지사(물환경관리과장),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(환경관리과장), 경상북도지사(물산업과장), 경상남도지사(수질관리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생활환경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장(환경정책과장),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축산정책과장), 국토교통부장관(건축정책과장)

전산사무관 **한상윤** 과장 전결 2017.6.8.
이율범

협조자

시행 유역총량과-1390 (2017. 6. 8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/ <http://www.me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7021 팩스번호 044-201-7037 / hansy@me.go.kr / 대국민 공개